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9. 5 선고 2017나65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

### 재판경과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 9. 5 선고 2017나6574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6가합23349 판결

###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총청

담당변호사 민경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의 소송수계인

1. W

2. X

3. T

4. Y

5. Z

6. AA

7. AB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문국

변론 종결 2018. 8. 22.

판결 선고 2018. 9. 5.

제1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6가합23349 판결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 1) 별지 목록 제1항, 제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7 지분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0,341/217,014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 2) 각 13,981,125원 및 그중 5,042,016원에 대하여는 2009. 9. 11.부터 2017. 11. 1.까지, 8,939,109원에 대하여는 2009. 9. 11.부터 2018. 9. 5.까지 각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의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16. 12. 1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각 15,285,714원 및 그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9. 19.부터, 14,285,714원에 대하여는 2009. 9. 11.부터 각 2016. 1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할 전 청주시 흥덕구 H 토지로부터 분할되었는바, Q 토지(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1975. 9. 30. 위 H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R 토지(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는 같은 날 AC 토지에서 등록 전환되었으며, S 토지(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1989. 8. 28. Q 토지에서 분할되었다.

나. 위 분할 전 H 토지에 관하여 1960년경 피고들의 조부인 I의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76. 7. 1. 이 사건 각 토지 중 6/17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의 부친인 B 명의로, 2/17 지분에 관하여 J 명의로, 4/17 지분에 관하여 K, L 각 명의로, 1/17 지분에 관하여 M 명의로 각 1975. 9. 22.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I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76. 7.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J, K, M, L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위 B 명의로 1976.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661/31,002 지분에 관하여 2004. 2. 16. N 명의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4. 9. 위 N의 지분에 관하여 B 명의로 같은 일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8. 9. 19. 지상권자 O 주식회사, 목적 철타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범위 동남쪽으로 철타 부지 160m<sup>2</sup>, 존속기간 철타 및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특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의 총 지료 일금 7,000,000원정을 일시에 지급하고 지상권 존속기간중 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 본 지료에는 지상권자가 본 토지 상의 공간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는

데 따른 지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정하여 1998. 8. 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9. 9. 11. 근저당권자 P,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B으로 하여 2009. 9. 9.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B은 이 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인 2018. 4. 18.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내지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4쪽 제3행부터 제5쪽 제5행까지)을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들은 원고 중중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나, 제1심판결 이유 중 인용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고 원고 중중총회는 요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1960년경 위 I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B은 위 I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았는데,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B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상속지분인 각 1/7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여야 한다.

2) B은 1998. 9. 19. O 주식회사에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지료 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B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700만 원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B은 2009. 9. 11. P에게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B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4,285,71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판단

1)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I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 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0023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의신탁은 등기의 추정력을 전제로 하면서 그 등기가 명의신탁계약에 의해 성립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등기에 추정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685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3, 6 내지 9, 3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I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B이 원고의 대표자이던 1999. 1. 2.경 작성된 원고의 회의기록부(갑 3호증, 피고들은 위 회의기록부가 원고의 종중회의록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도 주장하나, 위 문서 표지에 "U회의기록부"라고, 위 문서 본문 중 계칙 제1조에 "본계의 명칭은 U 계라 칭한다."라고, 제2조에 "본계는 위선(爲先)을 위주로 하여 화목과 우애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에 기재된 '계'는 원고 종중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중 원고의 재산목록에 "청주시 흥덕구 R 전 504평"과 "위 Q 4정2단2묘"가 기재되어 있다.

② 위 회의기록부에는 원고의 대표자이던 B이 2000년 초경 위 R 전 504평의 경작자이던 V으로부터 도조를 지급받아 이를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B의 날인(피고들은 제1심에서는 B 명의 날인의 진정성립을 다투지 않다가 항소심에서야 위 인영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하 같다)이 되어있고, 2000년 말경 또는 2001년 초경 마찬가지로 위 토지의 경작자이던 V으로부터 도조를 지급받아 이를 원고의 대표자이던 B이 보관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B의 날인이 되어있으며, 2001년 말경에도 마찬가지로 위 토지의 경작자이던 V으로부터 도조를 지급받아 이를 B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와 함께 B의 날인이 되어있다. 또한 위 대여 취지의 기재 뒤에는 "제2 안건"으로 '위 Q 임야 31,002m<sup>2</sup>'가 B의 단독 명의로 되어있는데 문중 산이므로 공동소유로 만들자는 제안에 대하여 '본 제안은 공동소유로 하지 말고 음력 2002. 10. 15. 문중회의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하고 공동소유보다 법인소유로 하자는 B의 제안대로 결정하였음'이라는 결의가 기재되어 있다.

③ B은 오랜 기간 원고의 회장으로 대표자였는데, 위 ①항과 같이 자신이 소유자로 등기된 토지들이 원고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위 ②항과 같이 자신이 소유자로 등기된 토지로부터 도조를 받아 원고가 사용한 것이나 자신이 소유자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 관계를 변경하자는 원고의 회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④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는 원고 조상들의 것으로 보이는 분묘들이 설치되어 있다.

⑤ 원고의 정관(갑 6호증)의 재산목록에 '청주시 흥덕구 R 전 504평'과 '위 Q 4정2단2묘'가 기재되어 있고, 같은 쪽 아래의 "회장 T" 다음에 B의 아들인 피고 T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⑥ 이 사건 각 토지는 분할 전 청주시 흥덕구 H 토지로부터 분할된 것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I에서 B으로 소유명의자가 바뀌는 지분 변경 과정이 동일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 중 나머지 토지의 소유 명의 관계를 달리 볼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명의신탁 존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명의신탁관계에 있어 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상속인들과 신탁자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고,

수인의 수탁자 사이의 관계는 대외적으로는 공유이나 수탁자는 신탁자에게는 수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관계상 수탁자들 사이에 지분의 이전이 있어 그 명의자가 바뀌더라도 신탁자가 신탁관계를 종료시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명의자와 신탁자 사이에 여전히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2다31675 판결 등 참조).

## (2) 판단

(가) 원고가 I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6/17 지분에 관하여 B 명의로, 2/17 지분에 관하여는 J 명의로, 4/17 지분에 관하여는 K, L 각 명의로, 1/17 지분에 관하여는 M 명의로 각 1975. 9. 22.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76. 7. 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또한 같은 날인 1976. 7. 1.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J, K, M, L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다시 B 명의로 1976. 6.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B과 J, K, L, M 사이의 소유명의 변경은 수탁자인 I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수탁자들 사이의 것에 불과하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까지 포함하여 신탁자인 원고와 수탁자인 B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나) 다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661/31,002 지분은 2004. 2. 16. 명의수탁자가 아닌 N의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2004. 4. 9. 다시 B의 명의로 환원되었는바, 이는 수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어서 제3자인 위 N가 위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위 661/31,002 지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될 수 없고, 나머지  $30,341/31,002 (= 1 - 661/31,002)$  지분에 관하여만 원고와 B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 다) 소결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분이 2016. 12. 14. B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B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제3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는 위 각 토지 중 각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7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각  $30,341/217,014 (= 30,341/31,002 \text{ 지분} \times \text{상속지분 } 1/7)$ 에 관하여 각 2016. 12. 14.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라)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별도의 조직행위를 하지 않았고, 구성원의 범위도 직계후손으로 제한하여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하므로, 유효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아 원고의 명의신탁해지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2) 판단

###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게 되어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 위 조항에 의한 특례의 인정 취지, 다른 비법인사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의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 비법인사단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참조). 한편, 고유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함이 없이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고유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49007 판결,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4842 판결 등 참조).

### (나) 판단

원고가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하다면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와는 별론으로 유효한 명의신탁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별도의 조직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원고가 종중이 아니라는 하나의 근거로 주장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위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이유 없다. 그리고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정관에 회원의 자격으로 직계후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3, 5, 6, 10, 13 내지 16, 19 내지 22, 28, 30,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선조 중 G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을 당연히 그 구성원으로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표현에 다소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과는 별론으로(종중원 사이에 방계혈족이 될 수 있으나 공동선조의 입장에서는 모두 직계후손이 된다) 피고들의 위 주장 근거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위 각 증거에 따르면, 원고는 C씨의 시조를 D로 중시조 E를 1세로 하여 5세(4대손)인 F의 후손이자 중시조로 15세(14대손)인 G의 후손들이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 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 종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이 1998. 9. 19. O 주식회사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지료 7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B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B의 위와 같은 지상권설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것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손해를 입었고 B은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소가 위 부당이득한 날인 1998. 9. 19.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11. 23.에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를 주장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과실이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때로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고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부당이득의 발생 여부를 알기 어려웠고 과실도 없었다거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 T가 2015. 3.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사무를 처리하면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등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3)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B이 2009. 9. 11. P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당시 B이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30,341/31,002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B의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하여 원고는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로받는 것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B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때문에 생긴 손해 부분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한 실제 피담보채무액 상당인데,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채권최고액보다 적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손해액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1억 원의 위 지분비율인 30,341/31,002 상당액이 되고, B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각 13,981,125원(= 1억 원 x 30,341/31,002 x 상속지분 1/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정된 5,042,016원(= 35,294,117원 x 상속지분 1/7)에 대하여는 위 근저당권설정일인 2009. 9. 1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1.까지, 나머지 8,939,109원에 대하여는 위 2009. 9. 11.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8. 9. 5.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위와 같이 인정되는 금원을 초과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나머지 피고들별 각 304,589원(= 원고가 주장하는 14,285,714원 - 위 인정된 13,981,125원, 661/31,002 지분 해당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유 없다].

###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며, 법인의 경우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통상 대표자가 이를 안 날을 뜻하나,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소멸시효가 진행하며, 만약 임원 등이 대표자와 공동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임원 등을 배제하고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다204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대표자였던 B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다른 임원들이 이 사건 소 제기시부터 3년 전에 이를 알았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피고들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0쪽 하5행부터 제11쪽 하5행까지)을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지영난**

**판사고진홍**

**판사오상혁**

**별지**